

공동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

(개인사업자)공동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 1인 명의의 사업용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, **2018년 12월 10일** 부터는 **중된 대표자 명의 사업용 카드도 “사업용 카드 등록”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**

※ 18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하는 경우 “2018년 4사 분기 사용분” 부터 정보 제공

<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>

국세청 홈택스 “**사업장**”으로 로그인 >> 조회/발급 >> 현금영수증 >> 사업용 신용카드 >>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